

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외(면제)대상

○ 법적근거 :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, 제40조

구 분	전기설비 종류
일반용 전기설비	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
자가용 전기설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압 600V이하로서 제조업 및「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제조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.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. 휴지(休止)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- 심야전력 전기설비(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) - 농사용 전기설비 (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) 4. 발전설비 20kW이하의 발전설비-전기사업용 포함

3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

○ 법적근거 :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

-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전기설비 종류
1.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
2.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
3.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(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)의 터널용 전기설비
4. 동일산업단지내 동일사업자의 2이상 사업장으로 용량합계가 2,500kW미만인 전기설비
5.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설비